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년 1월 23일, 이재관의원 등 11인

나. 회 부 일 자 : 2026년 1월 2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5.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2026.5.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5.20.) 상정, 소위심사 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재관의원)

현행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산업표준이나 인증심사기준에 부적합한 인증 제품이 유통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실시 사유, 인증 취소 사유를 확대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실시 사유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을 포함하고, 인증 취소 사유에 '고의로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하거나 제공한 때'를 포함함으로써 KS인증 제도의 신뢰성 제고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2조제1항제7호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 KS 인증제품 사후관리 강화

개정안은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실시요건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안 제20조제1항),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를 고의로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인증취소 사유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7호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시판품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	제20조(시판품조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이하 “시판품조사”라 한다)을 하게 하거나 인증받은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
<신 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 설>	2.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신 설>	3.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4. 그 밖에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인증의 취소) ① 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2조(인증의 취소)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를 고의로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

	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하거나 제공한 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20조[1]는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인증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KS 인증제품 및 인증서비스에 대한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제22조[2]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인증제품 등이 한국산업표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경우, 현장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할

1) 「산업표준화법」
제20조(시판품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이하 "시판품조사"라 한다)을 하게 하거나 인증받은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2) 「산업표준화법」
제22조(인증의 취소) ① 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4. 제20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6.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KS 인증제품 중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유통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의 실시요건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관계기관이 보유한 위해정보나 품질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인증받은 자가 고의로 KS 기준에 맞지 않게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조·제공하는 경우에도 현행 규정만으로는 직접적인 인증취소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사후관리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KS 인증제품 및 인증서비스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의 실시요건을 확대하고, 고의로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제공한 경우를 인증취소 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관계기관과의 정보연계를 통한 인증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적합 KS 인증제품의 유통 방지 및 소비자 보

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고의로 KS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조·제공한 경우 인증취소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KS 인증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20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 범위가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사권 발동 사유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위법령 또는 운영기준 등을 통해 조사 개시 요건과 절차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안 제22조제1항제7호는 “고의로”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않게 제조·제공한 경우를 인증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실제 제재처분 과정에서 고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및 입증방법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처분 기준의 명확성과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산업통상부는 시판품조사 실시요건 확대 및 인증취소 사유 확대를 통해 KS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위원회(소위원회) 심사내용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7. 기타 사항

없 음.